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중 부대개편 및 정원 조정 등으로 7개 직위가 現 직위 (명칭)와 未일치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를 각 軍별로 구분하고 있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순환보직과 충돌되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未일치하는 7개 직위 중 5개 직위는 직위 (명칭)를 변경하고, 2개 직위는 삭제가 필요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임기제 장성급 장교 보직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소속군을 삭제하고 직위만 명시하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 위	
·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지휘통신부장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810부대장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처장	·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 국방시설본부장	· 국군의무사령관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830부대장	· 해군본부 감찰실장
·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처장	·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124